

#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
##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?

- ▶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  
면세사업자(인적용역자 포함) 전체
- ※ 전문직 사업자 제외(배우자 포함)
  - 전문직 사업자 :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약사 등
- ※ 사업장 사업자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는 직전연도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,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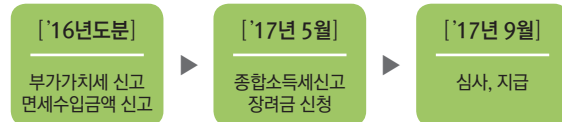
##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?

[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- 부부합산] (단위: 만원)

업종	조정률 (%)	근로장려금			자녀장려금
	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	부양자녀 있는 가구
가	20	6,500	10,500	12,500	20,000
나	30	4,333	7,000	8,333	13,333
다	45	2,888	4,666	5,555	8,888
라	60	2,166	3,500	4,166	6,666
마	75	1,733	2,800	3,333	5,333
바	90	1,444	2,333	2,777	4,444

- ※ 업종구분은 뒷면 ⑥번을 참고하세요
- ※ 적용례 : '가' 업종 수입금액 6,500만원 × 20% = 총급여액 등 1,300만원

## 장려금 추령을 위해서는?



신청시 **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**를 기재(입력)하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국세청에서는 **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음**을 알려드리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'17년에는 단독가구 40세 까지 장려금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☎ 국번없이 126번 [②번 누른 뒤 ④번] 검색창 **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**



[2017년 신청]

#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제도  
안내



## 근로장려제(EITC)·자녀장려제(CTC)란?

- ▶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**근로자** 또는 **사업자** 가구에 대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2017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(소득검증)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.
- ▶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하며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.

##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▶ **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**
  - ▶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**장려금 환수와 2,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**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  - ▶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  -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.
  - ▶ 신속한 심사·지급을 위해 신청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.

##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

구분	적용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~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	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
기한 후 신청한 경우	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	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	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'총급여액 등'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	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(1일 0.03%)

# 근로 장려금/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| 2017년 신청기준 |



## 1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?

▶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(①~⑦)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('76.12.31.이전 출생)일 것  
- 부양자녀 : 18세 미만('98.1.2.이후 출생,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
※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
- ②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총소득 기준금액

구 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1,3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자녀장려금	-	4,000만원	

\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 
\* 맞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- ③ 201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
- ④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)일 것
- ⑤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⑥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- 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

※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

## 2 신청기간과 방법은?

- ▶ 신청기간 : 2017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- ▶ 신청방법 : 전자신청(ARS전화 1544-9944, 모바일 홈택스앱, 인터넷 홈택스) 또는 서면신청  
※ 신청안내(전자신청 인증번호) 여부는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), 민원24에서 확인 가능

## 3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'연간 총소득'은?

- ▶ 2016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 (비과세소득 제외, 부부소득 합산)
- ▶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
- 근로소득 = 총급여  
-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  
- 기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 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
업종별 조정률

업종 구분	조정률
가 도매업	20%
나 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임업, 광업, 축산·어업관련 서비스업, 그밖의 다른 업종	30%
다 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	45%
라 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중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	60%
마 서비스업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 및 기타 개인)	75%
바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	90%

## 4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?

- ①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'총급여액 등'을 장려금 산정표\*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  
\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1 「근로장려금 산정표」, 별표 11-2 「자녀장려금 산정표」
- ② 신청자가 감액 및 총당 등의 요건\*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.  
\* 뒷면의 「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총당 등」 참조

## 5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'총급여액 등'은?

- ▶ '총급여액 등'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(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)  
→ 총급여액 등 = 총급여액 + 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

※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

구 분	소득범위	비 고
연간총소득	근로, 사업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	① 신청자격 중 ②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 사용
총급여액 등	근로, 사업	④ 산정방법 중 ① 장려금 산정 시 사용

※ 재산은 가구원 합산 / 소득은 부부 합산

- ▶ '총급여액 등'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
① 직계존비속·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
②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)  
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
## 6 근로·자녀장려금 계산 사례

- ▶ 본인 분식집  
1년 총수입 30,000천원  
▶ 배우자 총급여 5,500천원  
▶ 18세미만 자녀 1명  
▶ 가구원 소유재산 110,000천원  
▶ 자녀세액공제금액 150천원

- ① '총급여액 등' 계산  
→ 5,500천원 + 13,500천원(30,000천원 × 45%) = 19,000천원
- ② 근로장려금 계산  
▶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위 ①의 총급여액 등 해당 구간의 장려금은 1,150천원  
▶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50% 감액  
→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75천원
- ③ 자녀장려금 계산  
▶ 아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서 위 ①의 총급여액 등 해당 구간의 장려금은 500천원  
▶ 부양자녀의 수 1명을 곱하면 500천원  
▶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50% 감액하면 250천원  
▶ 자녀세액공제 150천원을 차감  
→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천원

근로장려금 산정표

총급여액 등		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		
이상	미만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19,000천원	19,100천원	0	412천원	1,150천원

자녀장려금 산정표

총급여액 등		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		
이상	미만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6,000천원	21,000천원	0	500천원	500천원

※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모의계산(회원 우측 상단)」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